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19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407	김상훈의원 등 14인	2025. 2. 25.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4. 28.)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2212765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 9. 8.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11. 24.)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는 위 2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의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의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의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선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에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신 설></u></p>	<p>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p>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선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 1. ~ 3. (생략)
- ③ · ④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